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2가단504815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박성화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현

2. C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7,464,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3. 29.까지는 연 5.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231,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197,464,9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질권설정자로서 담보한도액 231,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C가 D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고 잠적하여 피고 B가 피해를 입었는바, D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임대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B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신용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유로 피고 B의 지급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별지